

제 595 호  
1977.3.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 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  
전화 75 - 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75 - 5444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	배	
제 1150 호	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조례증개정조례	.....3
◎ 고	시	
제 48 호	도시계획 (재개발) 사업시행허가 (시행자지정승인)	..... 3
제 49 호	도시계획 (재개발) 사업시행허가 (시행자지정승인)	..... 4
제 50 호	도시계획시설 (시장) 일부변경결정및지정승인	..... 5
제 51 호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..... 5
제 52 호	도시계획시설 (공원) 시설및일부변경지적승인	..... 6
제 53 호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..... 7
제 55 호	도시계획용도지구 (미판지구) 지적승인	..... 7
제 56 호	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	..... 8
◎ 공	고	
제 44 호	의매업소허가일부규제	..... 9
제 46 호	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철사) 실시계획공람공고	..... 9
제 47 호	공인계각공고	.....10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	보도계장	공보계장	문화공보관	문화공보관	공람
	홍	서	진	X	인

1432

조 례

고 시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조례중 개정조례들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작 훈 인  
1977년 3월 3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150 호

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  
주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중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항중 .세정과장.을  
.세무조사과장.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. 허가사항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

도시계획(재개발)사업시행허가  
(시행자치체승인)

1. 건설부고시 제 46 호 (76.4.7)  
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5 호  
(76.12.27)로 재개발지구 결정  
및 지적고시된 무교재개발제 4.5  
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등  
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  
령 제 25 조및 행정권한 위임및  
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에 의  
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시행  
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1977.3.2

서울특별시장

지구명	위치	지정면적	시행면적	시행자	비고
무교재개발 구역제 4.5 지구일대	중구무교동 40, 45 번지	5,065㎡ 1,532평	3,829㎡ 1,158.3평	시내중로구룡의동 35-34 한국나이롱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동 찬	법적근거도시 계획법제 24 조

3. 허가조건

도시계획재개발사업 시행허가(시행자지적승인) 고시이후 재개발사업실시 절차를 밟아 5개월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수치 않을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실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일반적으로 시행자 지적승인을 취소한다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9 호

도시계획(재개발)사업시행허가  
(시행자지적승인)

1. 건설부고시 제 104 호 (76.7.14)

2. 허가사항

지구명	위치	지정면적	시행면적	시행자	비고
첫계천 7가 재개발구역 제 10 지구	중구 신당동 217-70 번지 일대	2,470㎡ 747평	2,347㎡ 710평	첫계천 7가 제 10 지구 재개발조합(가칭) 성북구 하월곡동 204 조합장 홍택선	도시계획법 제 24 조

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1 호 (76.8.4)로 재개발지구 결정및 지적고시된 첫계천 7가 재개발구역 제 10 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허가(시행자지적승인)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및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1977.2.28

서울특별시장

3. 허가조건

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시행허가(시행자지적승인) 고시이후 재개발사업실시 절차를 밟아 5개월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

을 착수치 않을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실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일반적으로 시행자 지적승인을 행정 취소한다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 
 도시계획시설(시장) 일부변경 결정및지적승인  
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은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및  
 가. 시장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3.4

서울특별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정	영림시장	관악구 봉천동 5-9	303.7 평	
변경	"	"	727.9 "	증 424.2 평
기정	영진시장	마포구 서교동 485-14	697.8 "	
변경	"	"	597.7 "	감 100.1 평

별첨 : 도면표시와 갈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 호  
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 
 1. 건설부 고시 제 25 호 ('77.2.4)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 
 관한 규정 제 2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1977.3.7  
 서울특별시

○ 도로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
신설	주토	3	89	12m	850m	길음동 북쪽 대3-6	길음교 633-1
·	·	·	90	·	210	미아국교 입구	길음교 중 3-89

별첨 : 도면표시와 갈음 (도면생략). 끝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2 호

도시계획시설 (공원) 시설 및  
일부변경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4 호 ('77.1.13)  
및 고시제 25 호 ('77.2.4)로 신설  
및 일부변경된 도시계획시설 (공원)  
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 
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 25 조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 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 
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 
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
에게 보인다.

1977.3.7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원신설 및 일부변경 조서

구분	공원명	위치	면적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마장아동공원	성동구 마장동 780			330명	
·	미아아동공원	도봉구 미아동 860-116			330	
변경	삼척공원	종로구 삼척동산 20	396,306	감 8,197	388,109	

※ 도면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3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24 호 (76.11.30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7.3.7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 위치 : 청량리동 260의 11~206의 21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홍농국교~삼육국교간 도로포장공사
3. 사업규모 :  $B = 6m$   $L = 330m$   
 $A = 17.8a$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77.2 ~

77.12.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달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·성명 : 별첨토지조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

도시계획용도지구 (미관지구) 지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제 25 호 (77.2.4) 로 변경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3.7

서울특별시장

가. 미관지구 지적승인 조서

순위	지 구 명	구분종별	구 간	연장 (m)	비 고
55	노선미관지구	기정 4종	상도동-방배동	4,100	상도여중-남성 국교간 선형 일부조정
		변경 4종	상도동-방배동	4,100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 호

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6 호 ('76.10.25) 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관 고시한다.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3.7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이동 18-1, 2, 산 20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, 자동차검사대행공사
3. 면적 및 규모 : 8,820 m<sup>2</sup>
4. 시행자 주소·성명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 가 310-68 자동차검사대행공사 대표이사 조 병 은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
가.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 부터 입주일 이내  
나. 준공예정일 : '77.4.15
6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7. 공사설제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4 호

의례업소허가일부규제

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제 5 조 및 11 조의 규정에 의한 의례업소 허가 규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7. 3 .

서울특별시강

- 1. 강북지역내 의례업소 신규허가 억제 (관광호텔 제외)
- 2. 도심지 (중심 5km 반경이내.) 의례업소의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장려 단, 본건 시행이전에 용도 지정되어 건축허가불 받은 건물은 제외한다.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6 호

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실시계획공람공고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 호 ('77.2.1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 청사 동대문구청) 용지인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

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- 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3. 8

서울특별시강

(공 랑 계 요)

- 1.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 신실동 97-13 의 1 필지
- 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공용 청사, 주차시설) 명칭 : 동대문구청
- 3. 사업의 규모 시행면적 : 375.1 평 (1,225.1㎡)
- 4. 사업시행자 : 동대문구청장
- 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  - 가. 사업착수일 : '77.3
  - 나. 준공예정일 : '77.9
- 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조서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·성명 : 별첨조서



사용토는수용합토지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
동대문구신설동	97-35	대	185.3평	임규오	
동대문구신설동	97-13	대	189.8평	김배적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7 호





공인개작공고

관인규정제9조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을 개작하였기 공고한다.

1977 . 3 . 5

서울특별시장

1. 사용년월일 1977. 2.5 부터
2. 공인개작 연명

서울특별시립제3근로자회관 관장외인	계 서울특별시립제3근로자회관 인	서울특별시립제3근로자회관 본임지출원외인
(인) 	(인) 	(인) 
서울특별시립제3근로자회관 본임수입금출납원인	서울특별시립제3근로자회관 전도자금출납원인	
(인) 	(인) 